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 - 7호

『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하여 공공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시설, 학교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1. 31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4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별표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련 규정검토와 발췌사항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가정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공용급수전, 사회복지시설, 학교는 1단계 요금 적용

별표 2 중 일반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군부대,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(m^3)당 940원 적용

별표 3 중 가정용의 구분내용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학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금 등의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
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
한다.

별표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[별표 2]						[별표 2]					
상수도요금표(제28조 관련)						상수도요금표(제28조 관련)					
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 사용요금				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 사용요금			
구경별	요금(원)	업종별	사용량 (㎡)	요금 (원)	비고	구경별	요금(원)	업종별	사용량 (㎡)	요금 (원)	비고
15mm	990	가정용	1~20	470	※ 공용급수전은 1단계요금 적용	15mm	990	가정용	1~20	470	※ 공용급수전, 사회복지시설, 학교는 1단계 요금 적용
20mm	2,400				※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 (㎡)당 670원 적용	20mm	2,400				
25mm	3,900		21~30	670		25mm	3,900				
32mm	6,900					31이상	850		32mm	6,900	
40mm	12,000		40mm	12,000							
50mm	18,000		50mm	18,000							
80mm	35,000		80mm	35,000							
100mm	59,000	일반용	1~300	870	※ 학교는 1단계 요금 적용	100mm	59,000	일반용	1~300	870	※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 (㎡)당 940원 적용
150mm	127,000				※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 (㎡)당 940원 적용	150mm	127,000				
200mm	180,000		301이상	1,120		200mm	180,000				
250mm	240,000					250mm	240,000				
300mm	330,000					300mm	330,000				
350mm	420,000		350mm	420,000							
400mm 이상	500,000		400mm 이상	500,000							
		욕탕용	1~1,000	590				욕탕용	1~1,000	590	
			1,001~3,000	810					1,001~3,000	810	
			3,001 이상	990					3,001 이상	990	
※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, 업종별 사용 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(㎡)당 요금임.						※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, 업종별 사용 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(㎡)당 요금임.					
※ 일반용의 제조업소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.						※ 일반용의 제조업소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.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[별표 3] 업종별구분표(제29조 관련) <table> <tr> <th>업종별</th><th>구분내용</th></tr> <tr> <td>가정용</td><td>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시설 <신 설></td></tr> <tr> <td>일반용</td><td>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</td></tr> <tr> <td>욕탕용</td><td>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 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</td></tr> </table> ※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, 업종별 사용 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(㎡)당 요금임. ※ 일반용의 제조업소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.	업종별	구분내용	가정용	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시설 <신 설>	일반용	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욕탕용	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 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[별표 2] 업종별구분표(제29조 관련) <table> <tr> <th>업종별</th><th>구분내용</th></tr> <tr> <td>가정용</td><td>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 회복지시설 4. 학교</td></tr> <tr> <td>일반용</td><td>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</td></tr> <tr> <td>욕탕용</td><td>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 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 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 단계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</td></tr> </table> ※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, 업종별 사용 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(㎡)당 요금임. ※ 일반용의 제조업소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.	업종별	구분내용	가정용	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 회복지시설 4. 학교	일반용	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욕탕용	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 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 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 단계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
업종별	구분내용																
가정용	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시설 <신 설>																
일반용	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															
욕탕용	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 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															
업종별	구분내용																
가정용	1.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.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 회복지시설 4. 학교																
일반용	1.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. 시설소화전사용량, 각종 공사시 출수 량,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 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,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															
욕탕용	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설비 기준을 갖춘 목욕장업(제2호 또 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) 2. 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호텔 업 안의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 단계요금) 3.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(사용량 × 최종단계요금)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수도법 제38조(공급규정)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. 1. 65세 이상인 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☐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(수도요금 감면)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교육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<u>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사회복지시설, 학교의 수도요금의 가정용 1단계
적용에 따른 수도요금수입 감소

나. 관련조문 : 별표 2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2015년 결산을 전제로 함

나. 추계 결과

○ 연간 2,367백만원의 수도요금수입 감소 예상

－ 사회복지시설 : 205백만원

－ 학교 : 2,162백만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“해당없음”

3. 작성자

－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위원